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8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김현정 · 김문수 · 황명선
송옥주 · 이수진 · 권향엽
강준현 · 김남근 · 이강일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금융지주회사법</u> 」에 따른 <u>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대표이사</u> <u>(「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u> <u>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u> <u>말한다)는 주주총회에서 출석</u> <u>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u> <u>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u> <u>3분의 1 이상의 결의로만 선임</u> <u>할 수 있다.</u>